

1. 개정이유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움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제15조의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 규정이 미비함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어려움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움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중복으로 포함하여 혼란 유발됨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유발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4.8.30 ~ '24.10.14)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과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큰 지역

가.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상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다.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

제8조의2제4호 중 “오염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법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인정받으려”를 “인정받아야 하”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반출정화대상)”을 “(반출정화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 후 공사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가 이루어지는 해당 현장 내에서 정화하게 되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우려가 있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거나 정화 여건(오염물질 종류, 정화공법, 시설의 유형, 부지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것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연구 이후 오염토양 처리계획을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 이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필요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그 밖에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과 제1항제7호에 따른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제출하여 적정 통보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상의 정화소요기간 중에는 영 별표2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본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 각 호 어느 하나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4항 본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을 각각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불소	800	1,300	2,0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 시안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별표 4 중 “(제12조제2항 관련)”을 “(제12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 중 “입력”을 “입력하여야 한다. 단, 반출자는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게 인계인수서의 일부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정화처리자는 시스템에 입력된 오염토양 인계인수 내역을 반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출자는 이행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정화처리자(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 중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하여 오염토양을 인계 받아 정화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정화처리자”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나)(1)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2)나) (2)를 삭제한다.

나. 직접경비

1) 검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시료채취·분석비 및 보고서 인쇄비 등으로 그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비

가) 별표 11 제1호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나) 시료채취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에 따라 지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지점수에 지점별 시료수를 곱하여 완료검증 시료수량을 산정한다.

(1)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 및 시료수 산정기준

면 적(m ²)	지 점 수(점)	격자간격(m)
500 미만	5 이상	10 ~ 14 이내
500 이상 ~ 1,000 미만	6 이상	13 ~ 17 이내
1,000 이상 ~ 2,000 미만	7 이상	18 ~ 22 이내
2,000 이상 ~ 3,000 미만	9 이상	20 ~ 24 이내
3,000 이상 ~ 4,000 미만	11 이상	21 ~ 25 이내
4,000 이상 ~ 5,000 미만	13 이상	21 ~ 25 이내
5,000 이상 ~ 6,000 미만	15 이상	22 ~ 26 이내
6,000 이상 ~ 7,000 미만	17 이상	22 ~ 26 이내
7,000 이상 ~ 8,000 미만	19 이상	22 ~ 26 이내
8,000 이상 ~ 9,000 미만	20 이상	23 ~ 27 이내
9,000 이상 ~ 10,000 미만	21 이상	24 ~ 28 이내
10,000 이상 ~ 15,000 미만	25 이상	27 ~ 31 이내
15,000 이상 ~ 20,000 미만	30 이상	29 ~ 33 이내

20,000 이상 ~ 25,000 미만	35 이상	30 ~ 34 이내
25,000 이상 ~ 30,000 미만	40 이상	30 ~ 34 이내
30,000 이상 ~ 35,000 미만	45 이상	31 ~ 35 이내
35,000 이상 ~ 40,000 미만	50 이상	31 ~ 35 이내
40,000 이상 ~ 45,000 미만	52 이상	33 ~ 37 이내
45,000 이상 ~ 50,000 미만	55 이상	34 ~ 38 이내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카드뮴	12	30	180
2. 구리	450	1,500	6,000
3. 비소	75	150	600
4. 수은	12	30	60
5. 납	600	1,200	2,100
6. 6가크롬	15	45	120
7. 아연	900	1,800	5,000
8. 니켈	300	600	1,500
9. 불소	2,400	3,900	6,000
10. 유기인화합물	-	-	-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12. 시안	5	5	300
13. 페놀	10	10	50
14. 벤젠	3	3	9
15. 톨루엔	60	60	180
16. 에틸벤젠	150	150	1,020
17. 크실렌	45	45	13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21. 벤조(a)피렌	2	6	21
22. 1,2-디클로로에탄	15	20	21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500	1,000	3,000

별표 10 제3호 전단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과학원장”을 “지정권자”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 어느 하나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 제2호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오염토양 정화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토양정화공사의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불소에 대한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화책임자에게 불소에 대한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을 다시 내리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3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u>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u>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p>	<p>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큰 지역</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u>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상위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u></p>
<p>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변경신고) ----- ----- ----- ----- ----- -----.</p>

1. ~ 3. (생략)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
는 경우

5. (생략)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
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
안전관리법」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
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

1. ~ 3. (현행과 같음)

4. -----
----- 토양오염물질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
조제4항 -----

-----.

② 법 제12조제4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①

----- 인정받아야 하

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 보고) ①·② (생략)

<신설>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반출정화사유)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 후 공사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2.·3. (생략)

<신설>

4.·5. (생략)

<신설>

설치·유지·보수·해체가 이루어지는 해당 현장 내에서 정화하게 되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우려가 있다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4.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여러 부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아닌 단일 부지 면적을 말함)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협소하거나 정화여건(오염물질 종류, 정화공법, 시설의 유형, 부지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것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7.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연구 이후 오염토양 처리계획을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한 경우. 이 경우 관할 지자체

6.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
용하려는 경우로서 국립환경
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
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신 설>

<신 설>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체장은 필요시 국립환경과학
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8. 그 밖에 해당 부지 내에서 정
화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반
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과
제1항제7호에 따른 오염토양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제출하여 적정 통보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상의
정화소요기간 중에는 영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본다.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 ⑦ (생략)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 각 호 어느 하나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